

의안
번호

174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운 영 위 원 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

운영위원회(구의회사무국)

의안번호	174 호
제 출 자	경수현 의원 외 11 명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검 토	전문위원 한상규

1. 제안이유

지난 운영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시 지적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 위원회의 회의 사항중 일부를 상위법 (지방공무원법 제10조)과 일치 되도록 일부 개정하여 규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4조 (위원회의 회의)

가. 위원회의 회의 구성 인원 지정 (제4조 2항)

나. 위원회의 회의 출석 인원 변경 (제4조 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입법예고 : 2023. 8. 21 . ~ 2023 . 8 . 26

4. 검토의견

○ 본 규칙 개정안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의 인사위원회운영 규칙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 안건으로

- 안 제4조 제2항은 회의 구성인원 으로
 - 「지방공무원법」 1)10조제2항 의 규정에서의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어 인사위원회 구성에 따른 운영규칙 신설은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 안 제4조 제3항은 회의 출석인원으로
 - 「지방공무원법 제10조 제3항」 2) 에 의거 인사위원회 회의 출석인원 및 의결 규정으로 또한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음
- 위 운영규칙 일부 개정 내용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법령에 위배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지방공무원법 제10조(인사위원회의 회의)

②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이 지정한다)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7조제5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전체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 경우 그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2. 3. 21.>

2)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